

제2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7.7.10(월) 10:00

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전문위원 유지영

#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6월 26일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8일

## 3. 제안 이유

- 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자문역할에서 심의·자문기능으로 확대하여 위원회 기능 재정립 및 운영활성화 도모

## 4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변경 : 조례명 중 “지원”을 삭제하여 명료화

▶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⇒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

나. 위원회 기능변경(안 제10조) : 자문→ 심의·자문 기능으로 확대

▶ 자문에 ⇒ 심의·자문에

다. 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 변경(안 제11조) : 업무중심 직위명으로 변경

▶ (제2항) 위원회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⇒ 위원장은 과학기술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

▶ (제3항) 도의 경제통상국장 및 바이오환경국장 ⇒ 도 과학기술바이오 업무 담당국장

## 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과학기술위

원회의 기능을 기존 자문역할에서 심의.자문기능으로 확대하여 위원회 기능 재정립 및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

- 다만, 기존 조례명에서 '지원' 부분을 삭제한 이유와 제11조 제4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